

사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05. 1. 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반복되는 문장으로 조문에 혼란을 주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

-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등

나. 배우자와 장애인이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4. 11. 20 ~ 2004. 12. 12)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2조(-----)</p> <p>----)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p>

현행	개정안
<p>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p> <p>1 ~ 4 (생략) ③ (생략) 1 ~ 4 (생략)</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p>	<p>제3조(_____)</p> <p>① _____</p> <p>_____</p> <p>-----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현행	개정안
<p>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p> <p>1 ~ 4(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u>협동화사업단지</u>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u>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u>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p>	<p>제12조(-----</p> <p>-----) ①(현행과 같음)</p> <p>②-----<u>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u>-----</p>

현 행	개 정 안
<p>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p>

관계 법령 발췌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第19條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 ①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1.22, 1996.12.12, 1998.2.28>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그 協同化實踐計劃에 協同化事業을 위한 團地造成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2.5>

③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中小企業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實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